

**참 고****개정 조문**

개정 전	개정 후
제100조의8(징수교부금) ① 법 제10 3조의17제3항에 따라 <u>납세조합에</u>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 합이 납부한 세액의 <u>100분의 2</u> 로 한다.  ② · ③ (생략)	제100조의8(징수교부금) ① ----- -----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----- ----- <u>100분의 1</u> . 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